##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843

발의연월일: 2021. 7. 30.

발 의 자: 박완수 · 권영세 · 김용판

김태호 · 김성원 · 태영호

강기윤 · 조경태 · 백종헌

최형두 • 추경호 의원

(11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 사무를 수행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일일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만 원의 비교적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 가 지속되고 있음.

현행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규정은 27년 전인 1994년에 결정된 이래로 현재까지 한차례도 조정되지 않은 시대에 맞지 않는 기준임. 이때문에 선거사무원 등에 지원하는 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일부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음식, 금품 등을 불법 및 편법으로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 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5조에 따른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항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게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제1항 및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사무장등의 수당 인상 차액의 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제12 1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이 인상된 경우에 그 차액의 산정은 2021년 1월 1일 현재 중앙선거관 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을 기준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③ 제135조에 따른 선거사무장
		<u>•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u>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
		하 이 항에서 "선거사무장등"
		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
		는 수당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사무장등의 수(선
		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
		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
		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
		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
		여야 한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